

 행정자치부	보 도 자 료	작성과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2017년 7월 14일(금) 조간 (7.1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허승원 연구관 김정은 주무관 강혜선
		연락처	042-481-6375 042-481-6381 042-481-6376

지방자치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7월 「이달의 기록」 주제로 ‘지방자치’ 선정 -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약 30년 간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지방자치법 공포(49.7.4.)를 계기로 「이달의 기록」 주제를 “지방자치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4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
-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37건(동영상 6, 사진 19, 문서 12)으로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의 변천 과정,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와 지방자치 활동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방의원 선거(1960), 지방자치제 준비(1991), 지방의회 개원(1991), 지방자치 1주년(1992) 등 **동영상 6건**
- 제1회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1952), 지방장관회의 기념 촬영(1953), 서울특별시장 선거 개표(1960), 서울특별시 민선 초대시장 취임식(196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서식(1991), 지방자치 50년 기념식(1999) 등 **사진 19건**
- 지방자치법(1949), 제1회 경상북도 함창면의회 임시회의 회의록(1952),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 지방선거 실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1995) 등 **문서 12건**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되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선출하며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문서 1·2)

○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 제천읍의회 의원 당선통지서, 경상남도의회 첫 회의 장면, 경상북도 함참면의회 제1회 회의록 등을 볼 수 있다.
(사진 3·4, 문서 3·4)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1956년에 시·읍·면장 직선제가 도입되었다가 1958년에 다시 임명제로 전환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1960년에 최초로 모든 자치단체장이 직선제로 선출되었다.

- 1960년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장에 나붙은 현수막과 서울특별시장 선거 개표 모습, 김상돈 초대 민선 서울특별시장 취임식 모습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사진 9·10·11)

- 한편, 1950~60년대에 개최된 지방장관회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의원들을 비롯한 특별시·도지사가 중앙과 지방의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사진 5·8·12)

- 그러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임명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는 후퇴하였다.
 -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는 ‘민의원과 참의원,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해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지방의회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다.(문서 7·8)
 - 또한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구성은 기약없이 연기되었다.(문서 9)
-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노력은 1980년대에 다시 이루어졌다. 1980년 5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 구성 시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이를 구체화하였다.
 - 이를 근거로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동영상 3·4)
 -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발표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문도 눈여겨 볼 만 하다.(문서 10)
- 2000년대에는 주민참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으로 지자체장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가능해졌고,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들에게 지방행정 통제권이 부여되었다.(문서 11·12)
-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자취를 기록물로 살펴보고, 민주주의와 함께 발전해 온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고 1 7월 '이달의 기록' 서비스 기록물 목록

□ 대상 기록물 : 총 37건

○ 동영상 : 6건

번호	기록물명	생산연도	소장기관	생산기관	철번호(건)
1	[대한뉴스 제293호] 지방의원 선거	1960	국가기록원	국립영화제작소	CEN0000211(2-1)
2	[대한뉴스 제1838호] 지방자치제 준비	1991	국가기록원	국립영화제작소	CEN0001808(2-1)
3	[대한뉴스 제1846호] 기초의원 선거	1991	국가기록원	국립영화제작소	CEN0001816(3-1)
4	[대한뉴스 제1849호] 지방의회 개원	1991	국가기록원	국립영화제작소	CEN0001819(2-1)
5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공명선거의 중요성	1991	국가기록원	국립영화제작소	CEN0005489(1-1)
6	[대한뉴스 제1914호] 지방자치 1주년	1992	국가기록원	국립영화제작소	CEN0001884(4-1)

○ 사진 : 19건

번호	기록물명	생산연도	소장기관	생산기관	철번호(건)
1	1952년 지방선거 후보자 유세	1952	국가기록원	유엔사진도서관	DTC0000422(2-1)
2	1952년 4월 25일 지방선거 투표	1952	국가기록원	유엔사진도서관	DTC0000025(1-1)
3	제1회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	1952	국가기록원	유엔사진도서관	DTC0000025(4-1)
4	경상남도의회 첫 회합 회의	1952	국가기록원	공보처	CET0039893(3-1)
5	지방장관회의 기념 촬영	1953	국가기록원	공보처	CET0042823(1-1)
6	의정부읍 지방의회 선거 투표	1956	국가기록원	공보처	CET0045181(15-1)
7	이승만대통령 경기도의회의원 일행과 기념 촬영	1956	국가기록원	공보처	CET0019269(2-1)
8	각도 지방장관회의	1958	국가기록원	공보처	CET0042877(2-1)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총선거 투표장	1960	국가기록원	공보처	CET0045221(5-1)
10	서울특별시장 선거 개표	1960	국가기록원	공보처	CET0045249(1-1)

번호	기록물명	생산연도	소장기관	생산기관	철번호(건)
11	서울특별시 민선 초대시장 취임식	1961	국가기록원	공보처	CET0026353(1-1)
12	지방장관회의	1961	국가기록원	공보처	CET0026380(3-1)
1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서식	1991	국가기록원	공보처	DET0057466(4-1)
14	서울특별시의회 테이프 커팅식	1991	국가기록원	공보처	DET0057466(2-1)
15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안내를 위한 설명회	1991	국가기록원	공보처	DET0057437(6-1)
16	부산 동래구 초대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식	1995	국가기록원	부산광역시	CET0075648(1-1)
17	조순 서울특별시시장 취임식	1995	국가기록원	공보처	DET0052188(6-1)
18	제1차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1996	국가기록원	공보처	DET0052808(1-1)
19	지방자치 50년 기념식	1999	국가기록원	국정홍보처	DET0032171(8-1)

○ 문서 : 12건

번호	기록물명	생산연도	소장기관	생산기관	철번호(건)
1	대한민국헌법(제8장 지방자치)	1948	대통령기록관	법제처	AA0003852(001)
2	지방자치법	1949	대통령기록관	법제처	AA0001693(001)
3	제1회 함창면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1952	국가기록원	경상북도	BA0047596(2-1)
4	제천읍 지방의회의원 당선통지서	1952	국가기록원	충청북도	BA0043798(2-1)
5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후보 선거공보, 선거표	1956	국가기록원	윤관백(기증)	DSA0000083(52-1)
6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명부	1960	국가기록원	행정자치부	BA0842513(6-1)
7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지방의회 해산)	1961	국가기록원	총무처	BA0188594(1-6)
8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1	국가기록원	총무처	BG0000227(26-1)
9	헌법개정공포(지방의회 구성 보류)	1972	국가기록원	총무처	BA0192329(2-1)
10	지방선거 실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	1995	대통령기록관	대통령비서실	JA0000036(0082)
11	주민투표법	2004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제15606호
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06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제16261호

참고 2 7월 '이달의 기록' 서비스 기록물 내용

□ 동영상(6건)

구분	기록물 건명	생산 년도	주요 내용
	기록물 철명		
1	지방의원 선거	1960	1960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전국 6,9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 투표가 종료된 후 478개 개표소에서 당락이 판명되었는데, 정당별로 보면 무소속, 민주당, 신민당 순이었다. 12월 19일 시읍면의회의원, 12월 26일 시읍면장, 12월 29일 지방장관 선거에 열성적인 투표 참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뉴스 제293호		
2	지방자치제 준비	1991	검찰에서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다. 국민 모두 감시자가 되어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맑고 깨끗하게 치루고, 선거의 이정표를 반듯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뉴스 제1838호		
3	기초의원 선거	1991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3월 26일 실시되었다. 무투표 당선자를 낸 493개 선거구를 제외한 전국 13,18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는 55%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4,304명의 시군구 의회의원 중 40-50대가 79%를 차지했다. 260개 기초의회는 4월 20일까지 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뉴스 제1846호		
4	지방의회 개원	1991	30년만에 부활된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4월 15일 일제히 개원되어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올랐다. 전국 260개 시·군·구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갖추고 임기 4년의 활동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뉴스 제1849호		

구분	기록물 건명	생산 년도	주요 내용
	기록물 철명		
5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공명선거의 중요성	1991	지난 30년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를 부활시키는 시·군·구의회 선거가 3월 26일 실시된다. 내고장 살림 살이를 담당할 대표를 주민들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민주발전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다. 주민의 대표는 지역사정에 밝고 존경받는 사람, 지혜롭고 식견이 높은 인물을 선출해야 하며,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선택		
6	지방자치 1주년	1992	지방자치 1주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지방의회의원들은 자치 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이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뉴스 제1914호		

□ 사진(19건)



(1) 1952년 지방선거 후보자 유세 (1952)



(2) 1952년 4월 25일 지방선거 투표(1952)



(3) 제1회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1952)



(4) 경상남도의회 첫회합 회의 (1952)



(5) 지방장관회의 기념 촬영(1953)



(6) 의정부읍 지방의회 선거 투표 (1956)



(7) 이승만대통령 경기도의회의원 일행과 기념 촬영(1956)



(8) 각도 지방장관 회의(1958)



(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총선거 투표장(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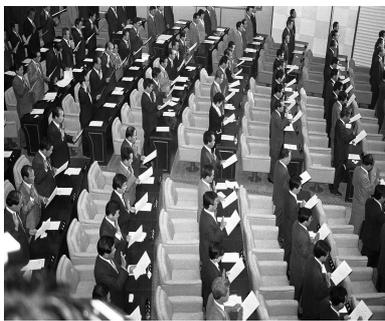
(10) 서울특별시장 선거 개표(1960)



(11) 민선 초대 시장 취임식(1961)



(12) 지방장관회의(1961)



(1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서식 (1991)



(14) 서울특별시의회 테이프커팅식 (1991)



(15)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안내를 위한 설명회(1991)



일련번호 : 1 내용 : 초대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식 164

(16) 부산 동래구 초대 민선자치 단체장 취임식(1995)



(17) 조순 서울특별시장 취임식(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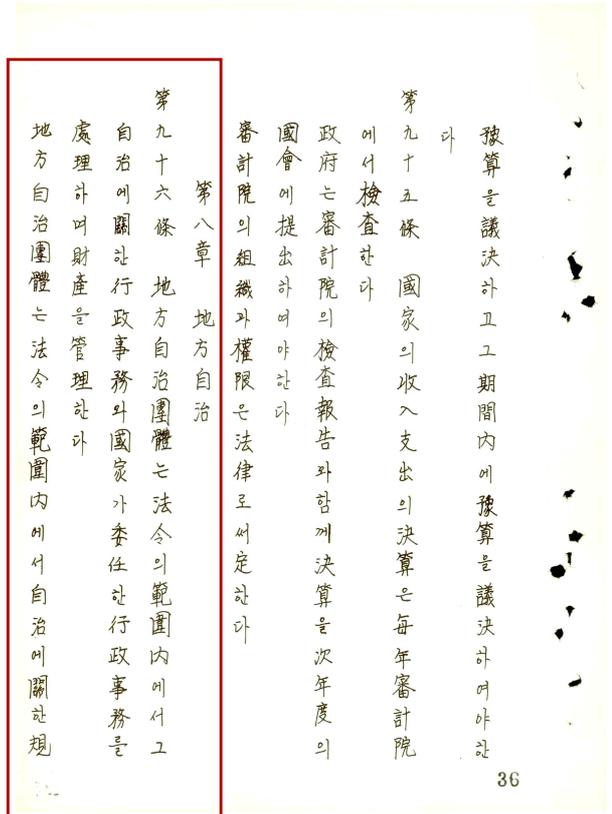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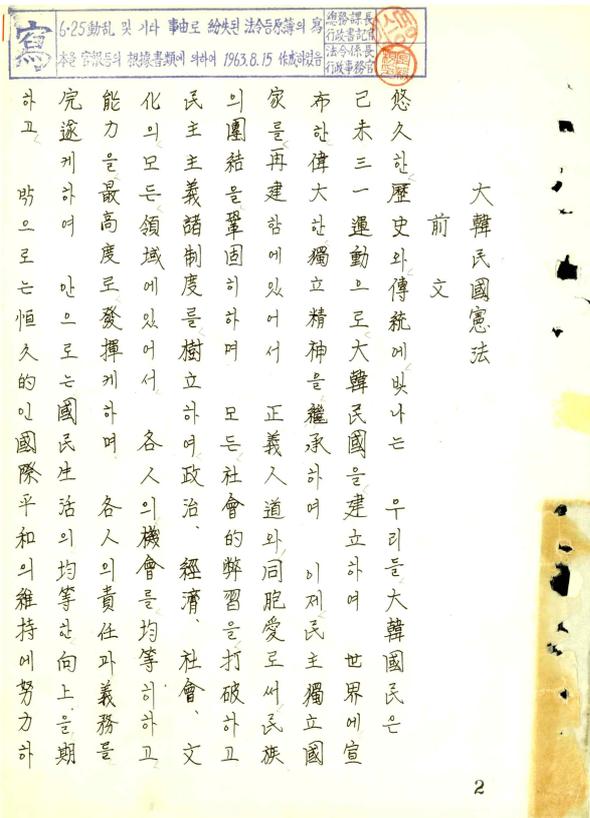
(18) 제1차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회의(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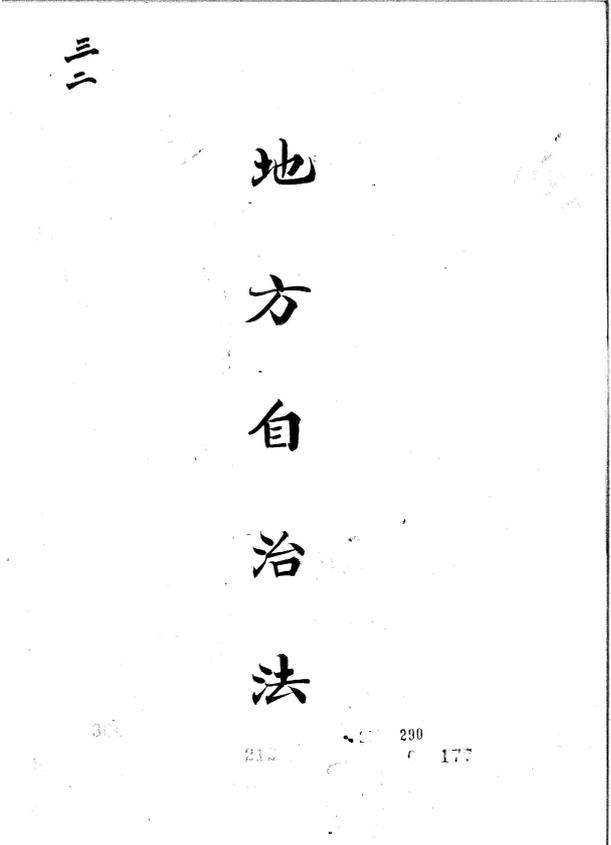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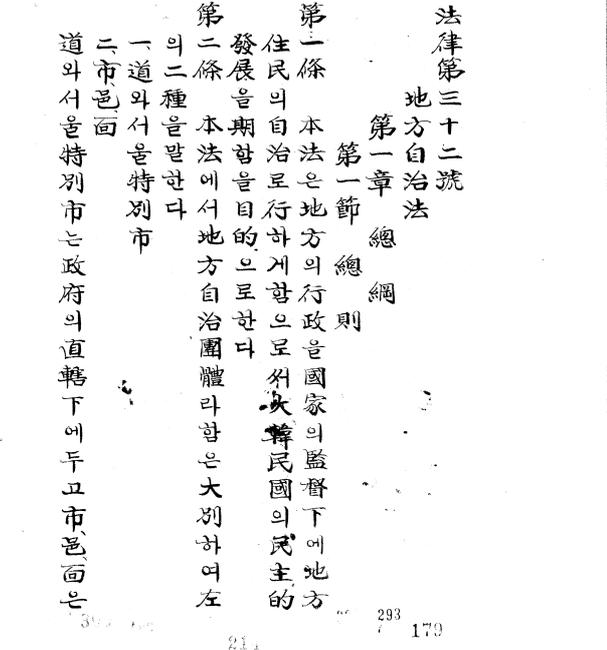


(19) 지방자치 50년 기념식(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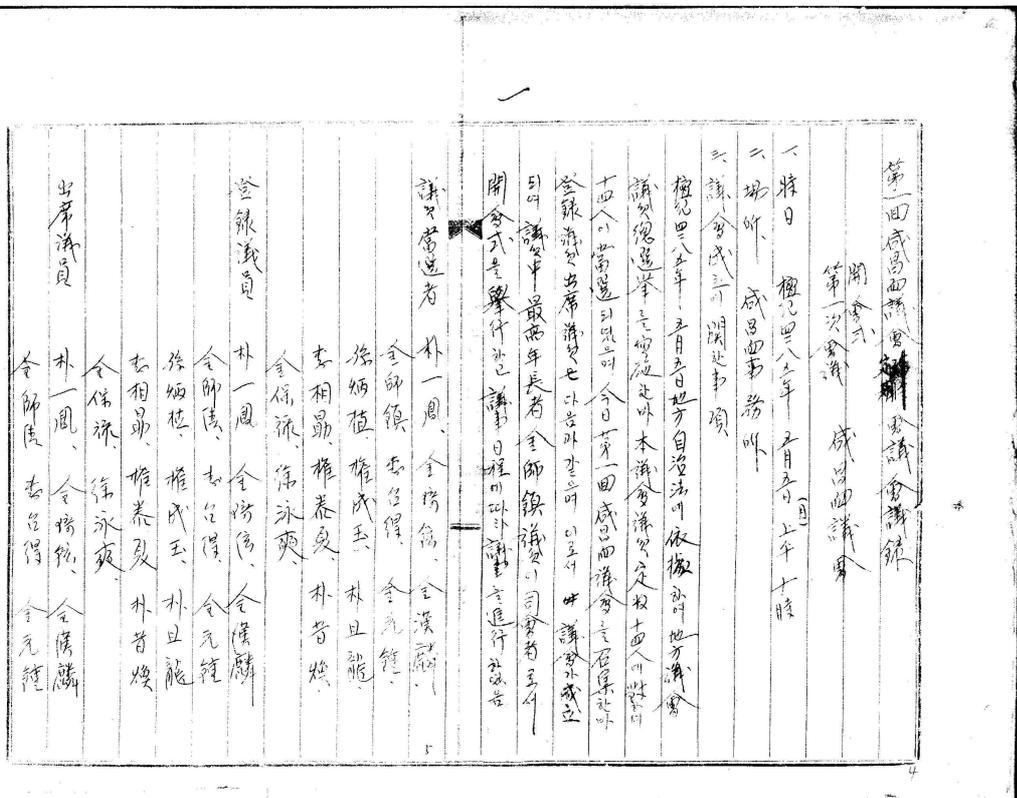
□ 문서(12건)

번호	기록물명	내용
1	대한민국헌법 (제8장 지방자치)	<p>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중 제8장에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다.</p> <p>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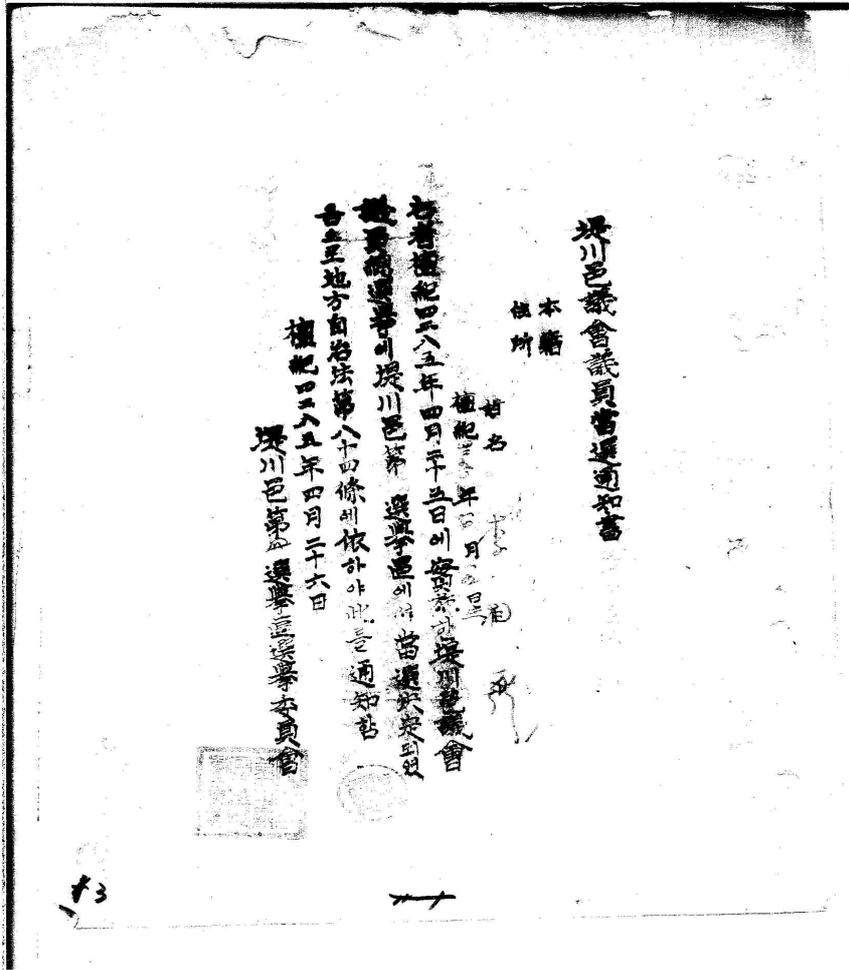


번호	기록물명	내용
2	지방자치법	<p>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이다.</p> <p>지방자치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구성, 의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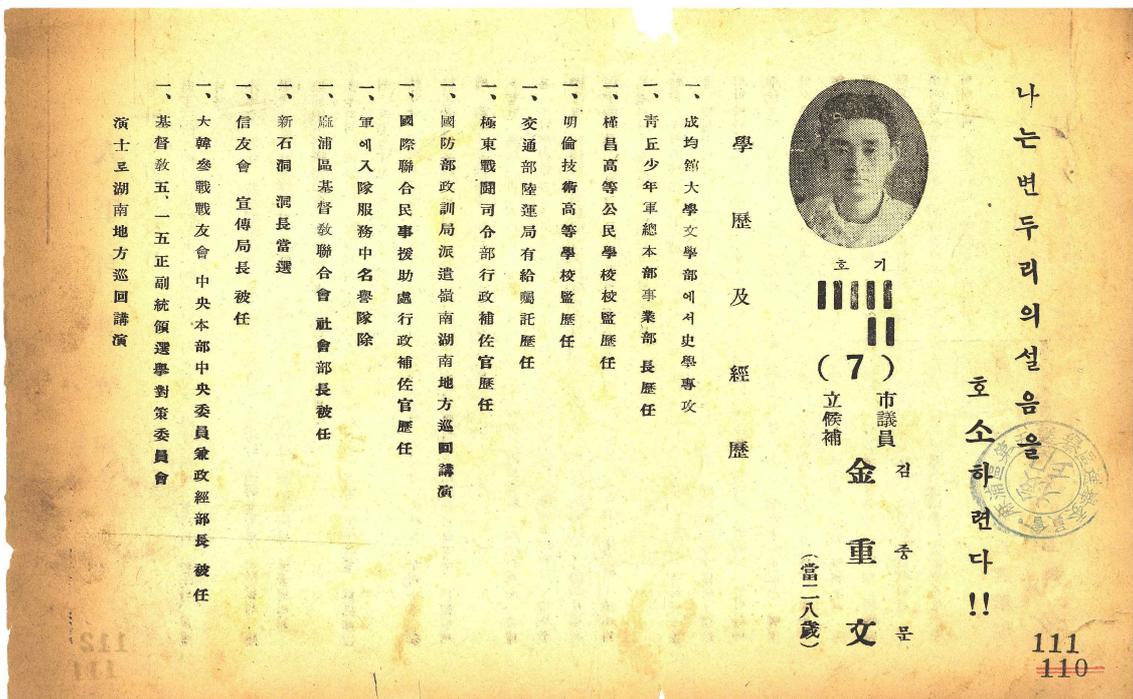
번호	기록물명	내용
3	제1회 함창면의회 정기회의 회의록	<p>1952년 작성된 제1회 함창면의회 회의록이다.</p> <p>1952년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함창면의회의 제1회 회의록으로, 사회자 선출, 의장선거 및 취임인사, 부의장 선거 및 취임인사, 간사, 서기 임명, 면장선거, 본회 및 제2회 회의 소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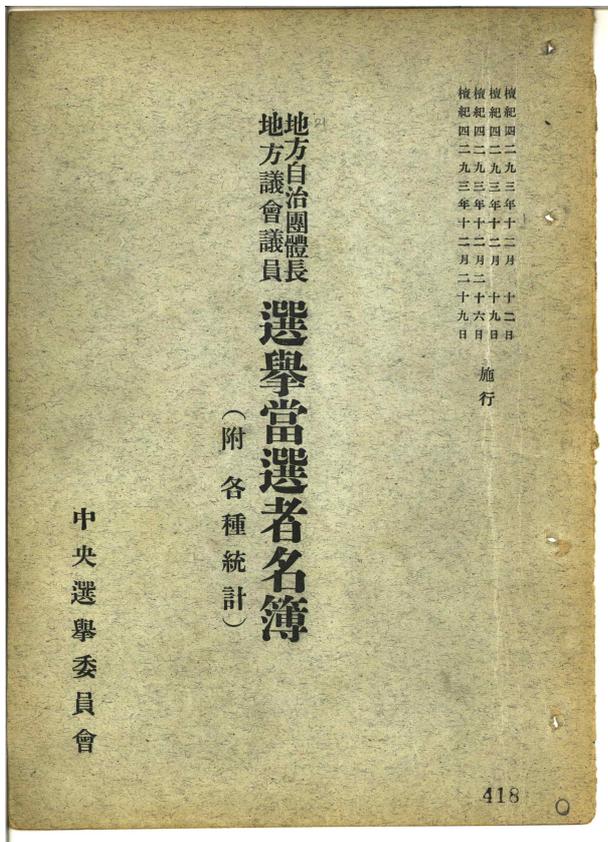
번호	기록물명	내용
4	제천읍의회 의원 당선통지서	<p>1952년 제천읍의회 의원 이상필 당선통지서이다.</p> <p>1952년 실시된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결정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84조에 의해 통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p>



번호	기록물명	내용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후보 공보, 선거표	1956년 실시된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김종문 선거표와 공보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 출마한 김종문의 선거표와 약력을 소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번호	기록물명	내용
6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당선자 명부	<p>1960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명부이다.</p> <p>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 선거 당선자에 대한 소속 정당, 주소, 학력 및 경력, 직업, 득표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p>



選學區	姓	名	別	年令	黨派	住	學	職	業	得票數	次
道 知事	金	相	述	男	五九	民主	서울特別市 大洞區 大洞四街八五	大洞區 區長	無	二七四五	張
道 知事	趙	大	衍	男	七三	民主	忠清南道 南門第一街六	忠清南道 南門第一街六 區長	無	三三三三	李
道 知事	李	奇	世	男	五七	新民	大邱市 大邱區 三區二四	大邱市 大邱區 三區二四 區長	無	三三三五	金
道 知事	金	相	述	男	五九	民主	서울特別市 大洞區 大洞四街八五	大洞區 區長	無	二七四五	張

번호	기록물명	내용
7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1961년 관보에 공고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이다. 민의원 및 참의원,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해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二 千 八 百 五 十 六 號 관 보 단기4294년 5월 16일(화요일) (2)

但 大韓民國國籍의所有者는出航
機의搭乘을一切禁한다
(가) 一切航空機의離着陸에는軍의
檢閱을받아야한다
(나) 國內線運航은別命이있을때까
지禁한다
二、港灣
(가) 外國船舶의入·出航은制限하
지않는다
但 外國船舶의上陸과大韓民國國
籍의所有者의乘船은一切禁한다
(나) 國內船舶은別命有할時까지國
際航路就航을禁한다
(다) 一切의船舶의入·出航에는軍
의檢閱을받아야한다

軍事革命委員會議長
戒嚴司令官
陸軍中將 張都暎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四號
軍事革命委員會는祖國의現實의危機를
克服하고國民의熱望에反應하기爲하
여다음과같이布告한다
一、軍事革命委員會는檣紀四一九四年
五月十六日午前七時起해서張勉故
府로부터一切의政權을引受한다
二、現任의各級參議院의고地地方議會

是檣紀四一九四年五月十六日午後八
時起해서이를解散한다
但 事務處要員은存續한다
三、一切의政黨 社會團體의政治活動
은此를禁한다
四、張勉故權의全國務委員과政府委員
은逮捕한다
五、國家機構의一切機能은軍事革命委
員會에依해서이를正常的으로執行한
다
六、모든機關과施設의運營은正常化하
고如何한暴力行爲도이를嚴斷한다
檣紀四一九四年五月十六日
軍事革命委員會議長
戒嚴司令官
陸軍中將 張都暎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五號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二號公布見金
融凍結令의細部實施要領中二一部를다
음과같이公布한다
金融機關으로부터引出하는預金七一回
引出에拾萬圓以下月間五拾萬圓까지로
制限한다
檣紀四一九四年五月十六日
軍事革命委員會議長
戒嚴司令官
陸軍中將 張都暎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六號
物價抑制令
모든物價의抑制을爲하여物價는檣紀四
一九四年五月十五日現在線을維持하고
買占買行爲를嚴禁한다
以上의違反者는極刑에處한다
檣紀四一九四年五月十六日
軍事革命委員會議長
戒嚴司令官
陸軍中將 張都暎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七號
韓國에駐屯하는外國人에對한
保護
各地區戒嚴事務所長은管內에駐屯하고
있는外國軍의大·公使館에對한生命과
財産을保護하라
檣紀四一九四年五月十六日
軍事革命委員會議長
戒嚴司令官
陸軍中將 張都暎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八號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二號公布見金
融凍結令細部施行要領中二一部를다음
과같이實施한다
軍事費의凍結을이를解除한다
檣紀四一九四年五月十六日
軍事革命委員會議長
戒嚴司令官
陸軍中將 張都暎

三三〇
160 2

정본간행부
출판시외사
인쇄

번호	기록물명	내용
8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p>1961년 9월 1일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다.</p> <p>종전의 지방자치법 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p>

法律第七百七號

四二九四年九月一日公布

地方自治에 관한 臨時措置法

第一條 (目的) 本法는 革命課業을 早速히 成就하기 爲하여 地方自治行政을 더욱 能率化하고 正常化함으로 併 地方自治行政의 健全한 土臺를 마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① 地方自治團體는 大別하여 다음의 二種으로 한다

一 道와 시를 特別市

二 市와 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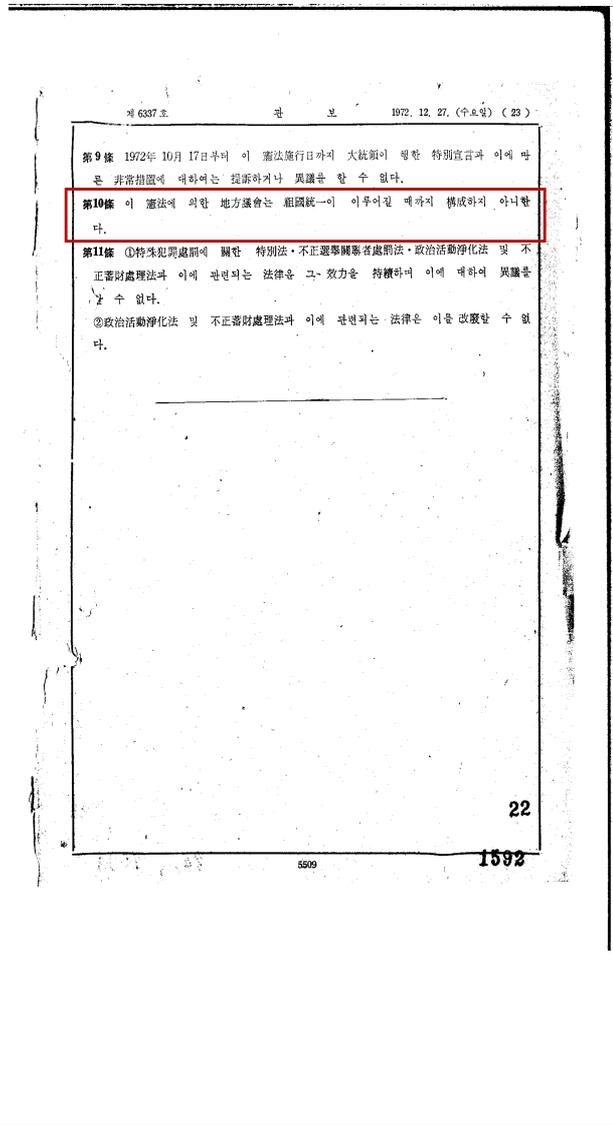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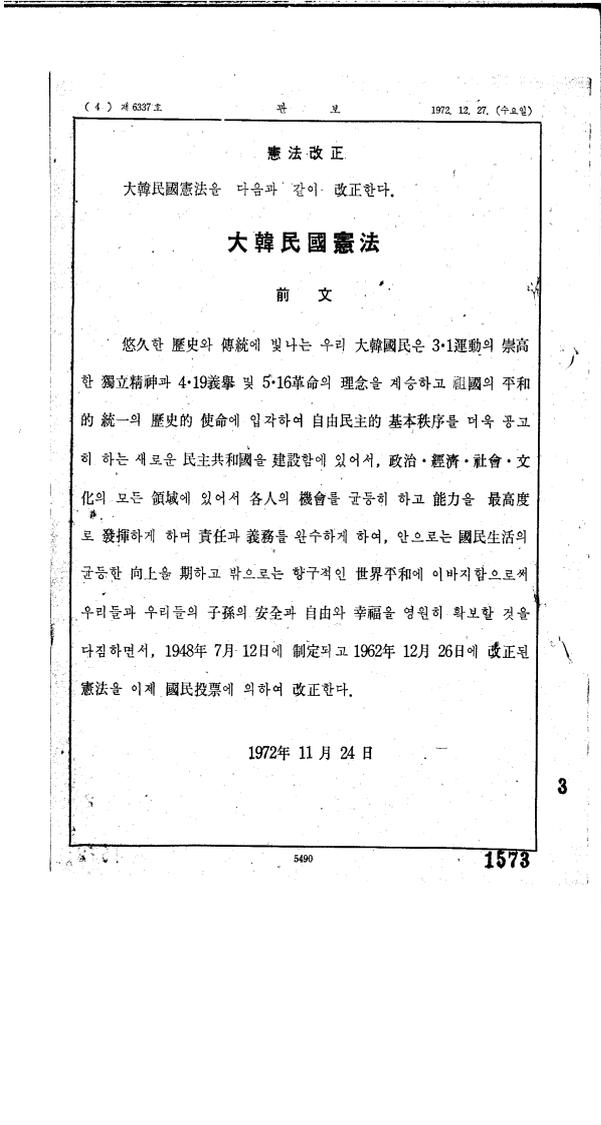
② 道와 시를 特別市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고 市 郡은 道의 管轄區域內에 둔다

第三條 (郡의 名稱과 區域) 郡의 名稱과 區域은 人口十萬內外로 再勘定할 때까지만 從

<2>

699

번호	기록물명	내용
9	헌법개정공포 (지방의회 구성 보류)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 공포안이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번호	기록물명	내 용
10	지방선거 실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문	<p>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를 앞두고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이다.</p> <p>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을 함께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맞아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6월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에 이정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p>
<div data-bbox="169 882 775 1744"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804 882 1410 1744" data-label="Image"> </div>	

번호	기록물명	내 용
11	주민투표법	<p>2004년 관보 제15606호에 게재된 「주민투표법」이다.</p> <p>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p>
<div data-bbox="167 913 730 118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아.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등에 대한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2 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법제처 제공〉</p> </div> <div data-bbox="167 1205 730 169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국회에서 의결된 주민투표법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 노무현</p> <p style="text-align: center;">2004년 1월 29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무총리 고 건</p> <p style="text-align: center;">국무위원 행정자치부 허성판 장 관</p> <p>◎法律 第7124號</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p> </div>		<div data-bbox="817 913 1409 170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p> <p>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p> <p>②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div>

번호	기록물명	내 용
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p>2006년 관보 제16261호에 게재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다.</p> <p>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의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p>

◇지방자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논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5월24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이홍섭

⊙법률 제7958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

제16261호

관보

2006. 5.24. (수요일)

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①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